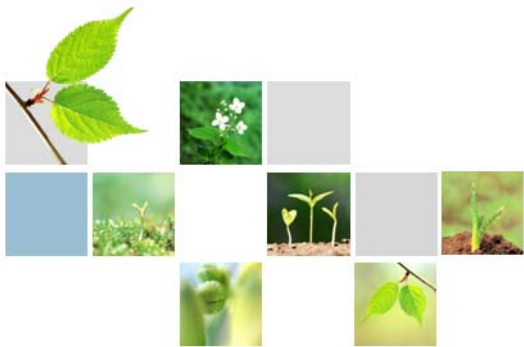


Zoom-in Trade



- ▶ COVER STORY:
원산지 표시 제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 FTA NEWS:
한-EU FTA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5
-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의 보세
가공화물통관절차 3
- ▶ WHERE IS GRACE CHANG?
BALANCING
AN EXTREME 7
- ▶ ABOUT WRITERS 7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한-EU FTA 가 7월 1일부로 정식 발효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효 이후 對 EU 수출입 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EU FTA 가 발효됨으로써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어 EU 국가와의 거래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러한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해당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확인하여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필요로 하며 해당 증명서를 요건으로 하여 수출입 통관 시 수입국세관은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협정세율의 적용 이외에 수출입 통관 시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 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필요성과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EU FTA 가 7월 1일부로 정식 발효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효 이후 對 EU 수출입 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EU 국가별로 약 18~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EU FTA 가 발효됨으로써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어 EU 국가와의 거래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러한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해당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확인하여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필요로 하며 해당 증명서를 요건으로 하여 수출입 통관 시 수입국세관은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무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 합니다.

그러나 협정세율의 적용 이외에 수출입 통관 시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 입니다.

□ 원산지 표시제도의 필요성

수출입 통관 시 적절한 원산지 표시는 1차적으로 통관시 세관에서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며 2차적으로 해당국의 국민이 외국물품을 소비함에 있어 이를 참고 하게 됩니다.

수입물품을 예로 들어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생산국에 따라 그 품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또한,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보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물품이라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방법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등과 같이 표기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추가하여 해외에서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널리 쓰이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적절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통관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창고비용, 국내 유통의 지연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원산지의 판정,

증명 등에 대한 관심이 대두 되는 것과 동시에,



사전에 물품별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확인하여 원산지 표시를 함으로써 작게는 국내 소비자의 보호, 통관의 원활화를 도모 할 수 있고, 크게는 건전한 유통구조, 소비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영 훈

yhkim@customsservice.co.kr

한-EU FTA,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된 이래 약 보름간 대 EU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수입액은 16% 각각 늘었다. EU의 재정위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FTA 활용효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소식지에서는 한-EU FTA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된 이래 약 보름간 대 EU 수출액은 14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수입은 16억 5000만 달러로 16% 각각 늘었다.¹ 또한 한-EU FTA 활용률은 수출 55%, 수입 13%이며 이는 한-아세안 3.5%, 한-인도 17.7%에 비교¹하여 EU의 재정위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FTA 활용효과라고 볼 수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건 별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의 요건인 원산지 인증수출자로서의 지정이 요구되며, 이달 8일 정부가 집계한 EU 수출기업 인증 수출자 지정 실적에 따르면, 대상기업 수 기준으로 54.6%,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83.9%가 이미 인증을 획득했다¹.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기업이라면 이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FTA의 혜택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할 시점이다.

수출자의 경우, 인증 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수출품목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통해 역내산 품목에 대하여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자율발급)하여야 하며, 원산지판정에 사용된 근거서류를 향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자의 경우, EU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문안의 진위여부, 직접운송여부 등을 판단하여 수입신고 시에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근거서류를 향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사항 및 궁금점은 무엇이 있을까?

1. 단일탁송화물에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된 경우의 수입시 6,000유로 기준은?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한번에 보내진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또한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원산지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산입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현행 인정범위>	<추가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GREECE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IT - 'EU'표기, 'EC'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ropean Community'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EU 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p>※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말타 : 'UE'표기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ES'표기 · 그리스 : 'EE'표기 · 불가리아 : 'EC'표기 <p>※ (주의)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로 'Made In EU'는 사용불가, 반드시 국가 명을 표시하여야 함 (Made In Germany 등)</p>	
<원산지표기 불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EC' 및 'European Economy Community': 한-EU FTA 협정에 근거되지 않은 표현 - EC의 각 당사자 언어 표현 및 그 약어: 각 언어 본 협정문에 'EC'는 나와있지 않음 -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Danish, German, Italian: 한-EU FTA 협정에 근거되지 않은 표현 	

2.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은?

비원산지제품이 명확하게 표시하여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례> 원산지인증수출자: 독일의 수출자

* A 품목: 원산지 독일(DE) - EU 産

* B 품목: 원산지 중국

* C 품목: 원산지 프랑스(FR) - EU 産

<원산지신고문구 표기 방법>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DE/4711/EA/0007)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Or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DE/4711/EA/0007)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DE, FR preferential origin"

3. 원산지 신고서에 'EU'라고 표기가 가능한가?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는 위의 표와 같다.

4.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과 원산지신고서의 소급발급?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행관세율과 협정관세율의 차액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정발효일에 운송 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이하 "경과규정 해당물품")의 경우에는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⑤ 보세가공화물 통관절차

지난호에서 일반 수출입화물 통관절차를 살펴 본데 이어 이번 호부터는 보세가공화물의 통관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보세가공화물의 통관절차는 '①종이수책(지질수책) 관리하의보세가공화물 통관절차' → '②전자수책(전자장책)관리하의 보세가공화물통관절차' → '③전자화수책(전자화수책)관리하의보세가공화물 통관절차' → '④수출 가공구 반출입 화물 통관절차' → '⑤주해원구 반출입 화물 통관절차' 등으로 구분되나 여기서는 제약관계 상 일반적인 공통적인 보세가공화물 개요와 관리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1. 보세가공화물의 개요

보세가공화물이란, 해관의 비준 하에 납세수속을 밟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어 국내에서 가공·조립 후 다시 해외로 반출되는 화물을 의미한다. 가공무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식이 있다.

1) 래로 가공(來料加工)

국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원료를 제공하고 경영기업은 수입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또는 조립한 후 가공비만 받고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판매하는 형식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2) 진료가공(進料加工)

경영기업이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에 다시 이를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보세가공화물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원료수입 시 수입관세 및 수입단계에서 해관이 대신 징수하는 세금들의 납부를 일시 유예하며, 완제품 수출 시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2) 원료수입 시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허가서 제출을 면제하지만, 완제품 수출 시 허가증관리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해관에서의 수출입면허(放行)가 곧 통관종결(結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세가공화물이란 다음과 같다.

- 1) 수출제품을 가공·조립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해관에서 보세를 허가한 원재료, 부(속)품(零部件), 소자부품(元器件), 포장재료, 보조재료(이하 원자재로 약칭)
- 2) 수입보세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 반제품
- 3) 보세가공생산과정 중에서 생산된 부산품, 불량품(殘次品), 스크랩(边角料), 잉여원자재

2. 보세가공화물의 감관과 관리내용

해관의 보세가공화물에 대한 감관방식에는 2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수출가공구와 과경공업구 등과 같은 물리적인 울타리를 쳐놓고 감관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비 물리적인 울타리 감관방식으로 지질수책관리 또는 전산망을 채용한 감관방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물리적인 울타리 감관 방식이란, 국가의 비준을 거쳐 관세국경내 또는 관세국경선상에 일부 지역을 정해놓고 울타리를 쳐놓은 다음, 기업으로 하여금 울타리 안에서 전문적인 보세가공업무를 종사케 하고 해관에서 폐쇄식 감관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내의 보세가공 폐쇄식 감관방식은 수출가공구라고 하며, 관세국경선상에 있는 보세가공 폐쇄식 감관방식은 과경공업구(주해원구)라고 한다. 보세구와 보세항구내의 기업 또한 보세가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비 물리적인 울타리 감관방식에는 주로 지질수책관리와 전산망 감관방식이 있다. 지질수책관리란 일종의 전통적 감관방식이므로, 주로 가공무역지질 수책을 이용하여 계약내용을 진행하며, 수출입의 근거가 되고 아울러 수입원재료 및 수출완제품의 실제정황을 기록하여 최종적으로 핵소 종결처리 시 증빙자료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관방식은 그 동안 해관에서 보세가공화물에 대한 감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대외무역과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전산망에 의한 감관방식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산망에 의한 감관 방식이란 일종의 첨단감관방식으로, 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해관이 가공무역기업을 감관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장부와 전자화수책을 만들어 등록, 수입, 수출, 핵소 등 전 과정을 컴퓨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관은 과학적 관리가 가능하고 기업은 통관효율이 제고됨으로써 앞으로는 해관의 보세가공화물에 대한 주요감관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감관방식은 또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도



분류하는데, 첫째는 대기업에 대한 관리로 전자화장부를 통한 관리를 하게 되며, 둘째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로써 전자화수책을 통한 계약서를 근거로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각종 감관방식에 대한 보세가공화물관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5 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1) 상무심사비준

가공무역업무는 반드시 상무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쳐야지만 해관의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 상무주관부문의 가공무역계약 심사비준

가공무역경영기업은 해관에 가공무역계약 등록수속 또는 전자화수책 신청 전에 우선 상무주관부문에서 계약에 대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을 받은 후에는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명서"와 "가공무역기업경영상황과 생산능력증명서" 및 상무주관부문에서 심사비준을 동의한 가공무역계약서를 가지고 해관에 가서 등록한다.

나) 상무주관부문의 가공무역경영범위 심사비준

가공무역경영기업은 해관에 전산망감관과 전자장부, 전자화수책을 신청하기에 앞서 우선 상무주관부문에서 가공무역경영범위에 대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상무주관부문에서 발급한 "경영범위비준증명서"와 "가공무역기업경영상황과 생산능력증명서"를 가지고 해관에 전산망감관과 전자장부, 전자화수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세등록신고(备案)

가공무역원자재는 해관의 비준을 받아야만 보세수입이 가능하다. 해관의 보세비준은 등록신고수리를 통해 실현된다. 등록신고 수리된 가공무역원자재는 수입 시 일시적으로 납세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보세수입이 가능하다. 지질수책관리와 전산망감관 하에서의 보세가공화물 신고는 모두 등록신고절차가 있으며, 해관은 등록신고수리를 통해 비로소 보세비준을 실현한다. 수출가공구의 보세가공화물 신고도

등록신고절차가 있다. 이는 수출가공구 가공무역 전자장부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반입신고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가공구반입등록신고 목록”(이하 “수출가공구반입등록신고목록”이라 약칭)을 사용하며, 등록신고와 반입신고가 함께 이루어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해관의 가공무역원자재 등록신고 수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합법경영

합법경영이란, 보세를 신청하는 원자재 또는 보세신청인 자신이 국가에서 금지하는 범위에 들지 않아야 하며, 아울러 관련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수출입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나) 재 반출

재 반출이란, 보세신청화물의 흐름이 분명하여 경내로 반입되어 가공·조립된 후에 최종적으로 다시 경외로 반출됨이 명확해야 하고, 보세신청 증빙서류가 반출입의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감관 가능

감관 가능이란, 보세신청 한 화물이 수출입 단계에 있든, 아니면 경내에서 가공·조립 단계에 있든 간에 모두 해관에서 감관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불합리한 요소에 의해서라도 감관이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납세유예(暫緩)

국가는 전문적으로 수출제품을 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수출완제품을 가공하는데 소비되는 원자재의 수량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징수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면세란 수출완제품상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면세를 의미한다. 다만, 원자재가 수입될 때에는 수출제품 상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실제수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관에서는 먼저 보세를 비준하고 제품이 실제로 수출되고 최종적으로 수출제품 상에 사용된 원자재 수량이 확정된 후에 다시 징수 또는

면세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수출에 공한 것은 징수를 면제하고 수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기업으로 하여금 납세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감관의 확장(延伸)

해관은 보세가공화물의 감관에 대하여 장소와 시간에 불문하고 모두 감관을 확장하여야 한다. 장소에 관해서는, 보세가공 원자재가 입항지 해관감관 장소를 출발한 후에 가공, 조립을 진행하는 장소는 모두 해관의 감관 장소가 된다. 시간적으로는, 보세가공의 원자재가 입항지에서 인도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해관의 보세감관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으로, 해관에서는 가공, 조립된 후에 재수출 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최종적으로 핵소종결될 때까지 감관을 계속해야 한다.

가) 보세허가기한

보세허가기한이란, 해관에서 보세를 비준한 후에 경내에서 가공, 조립, 재수출될 때까지의 시간적 제한을 의미한다. 종이수책과 전자화수책으로 관리되는 보세가공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준을 받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되는 최장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구체적인 집행은 계약서 기한과 가공기한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다소 바뀔 수가 있다. 전산망감관모델에 있어 전자장부관리에 해당되는 원자재의 보세 기한은 기업 전자장부 기록의 첫 번째 원자재가 수입된 날로부터 이 전자장부가 없어질 때까지이다. 수출가공구와 주해원구 보세가공기한은 원칙적으로 가공무역 원자재가 구역에 반입된 때로부터 가공무역 완제품이 구역에서 반출되어 해관종결처리 할 때까지이다.

나) 핵소(核銷) 신청기한

핵소신청기한은 가공무역경영인이 해관에 핵소를 신청할 수 있는 최후날짜를 의미한다. 종이수책과 전자화수책으로 관리되는 보세가공 핵소 신청기한은 종이수책 또는 전자화수책의 유효기간이 도달한 날부터 또는 완제품이 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전자장부관리의 보세가공 핵소 신청기한은 일반적으로 180일을 한 번의 신청주기로 한다. 최초의 핵소 신청은 해관이 전자장부의 수립을 비준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핵소 신청을 해야 한다. 그 후로부터는 지난 번 핵소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만 180일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해야 한다. 수출가공구에서 보세가공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매 180일마다 해관에 보세가공화물의 수출입과 반출·입 실제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해원구 내에서 보세가공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관련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매년 해관에 한 번씩 핵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핵소 결관(核銷結关)

보세가공화물은 해관의 핵소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모든 통관절차를 완결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세가공화물의 핵소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보세가공용원자재는 수입된 후에는 가공과 조립을 통하여 원자재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 즉, 재수출되는 상품은 더 이상 원상태의 수입상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해관에 신고하는 핵소는 수출입수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제품이 수입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것인지 여부까지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소 신청을 함에 있어 수량이 종종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결국 핵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량 불일치문제를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기업이 핵소를 함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관세청
부산국재우편세관
세관장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등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2년 소급적용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관련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 내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으면 인증을 획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수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단, 소급발급이 가능한 품목은 협정발효일(7월 1일) 이후 통관한 품목에 한한다.

사후적용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 에에서도 이를 준수한다.

소급발급과 사후적용의 관계

원산지증명서는 2년 이내 소급발급이 가능



하나, 실질적인 사후적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만 인정된다. 즉, 증명서의 소급발급과 사후적용은 별개의 규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EU로 수출시 EU의 각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사후적용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EU로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급하는 수출자는 현지에서 규정하는 사후적용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제도 도입(안 제 6조의 4 신설)

[취지]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은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해당 확인서는 기존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같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판정 및 확인하기 위함이나 국내제조확인서의 경우 섬유 및 직물 등 일부 품목에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절차]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들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포괄확인기간은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며,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사용]

재료 생산자 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기관발급)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할 수 있다.

□ 기타 개정사항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 완화하여 위하여 원산지증명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처벌

이력 관련 요건 등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에서 제외하였다.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는 물품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적용수량을 배정하는 물품을 납치류 등으로 규정하였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다.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1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변경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조정됨으로써 신규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대상(별표 1의 가)이 추가 되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세종번호	HSK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P1	1702.30-1000	포도당	동물의약품 제조용 무수포도당	신설
P3	3102.10-9000	요소	파티클로보드, 섬유관 및 합판 제조용	신설
P3	7002.20-1000	유리제의 봉(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반도체 제조용의 것으로서 퀴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신설
P3	7002.31-1000	석영유리제의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P3	7020.00-1013	기타의 석영유리제품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㉞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TEST 장비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HQ 544315 '89.05.30.)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우리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①수입물품 생산에 사용 되는 재료 및 부분품, ②공구, 금형, 다이스 등 ③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입 전 물품의 Test를 위한

Test Equipment 제공



장비의 비용이 제조비용으로써 해외 조립자의 장부에 반영되어 있다면, 그 비용은 산정가격의 구성요소로 결정될 수 있음

□ 결정(Holding)

1. 본 사안에서 테스트 장비는 TAA 402(h)(1)(A)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가격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장비에 대한 비용의 산입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서 결정 되어야 할 것임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 거래사실(Facts)

미국의 구매자 B는 완제품 기기를 미국으로 수입함에 있어 기기가 선적되기 전에 그것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TEST 목적에 사용되는 장비를 해외의 제조자에게 제공함

□ 쟁점(Issue)

테스트장비 제공이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미국 관세법 402(h)(1)(A)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생산지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물품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 것을 말한다.

(The term “assis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f su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free of charge or at reduced cost, by the buyer of imported merchandise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r the sale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of the merchandise:)

- (i) 재료, 구성요소, 부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수입물품에 사용되는 물품
- (ii)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및 이와 유사한 것
- (iii)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iv)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기술, 설계, 도안, 공예, 디자인 등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

2.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작업의 일부도 아니고, 제품의 생산에 필요하지도 않은 철강제구조물의 디자인 및 그 구조의 정확성을 테스트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국의 구매자가 해외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는 미국 관세법 402(h)(1)(A)(ii)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이 아님 (HQ542187 '80.11.07)

3. 본 사안에서 구매자가 제조자에게 제공하는 테스트 장비는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지원의 종류 중 (ii)에 해당하지 않음

4. 또한 구매자가 제조자에게 제공하는 테스트 장비(equipment)는 생산지원의 다른 범주(i), (ii), (iii), (iv)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생산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5. 산정가격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면, 테스트 장비에 대한 비용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이거나 또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 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되어 산정가격의 구성요소가 될 수도 있음 (관세법 402(e)(1)(A),(B))

6. 이 경우 수출국내에서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서 테스트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Balancing an Extreme



장승희 대표 관세사

우리는 사회의 탓, 국가의 탓을 많이 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사회의 탓,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국가의 탓을 합니다. 오래 전 한 종교단체에서 시작된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캠페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판이나 비난을 하기에 앞서 내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먼저 조금 양보를 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cover story는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국내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꽤 높은 수준의 법규 준수를 요구하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명확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혜택을 실제로 누리실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려 합니다. 차근차근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담당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8월 1일부로 발효되는 한-Peru FTA에 대하여는 [신한관세법인 소식지] Zoom in Trade 4월호에 상세히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국제우편세관의 임창환 세관장께서 계속해서 중국의 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보세가공화물의 통관절차에 대해서입니다.

관세평가의 사례는 TEST 장비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디 고객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4년만이라는 급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뜻한 수증기를 가진 남쪽에서 올라오는 구름과 찬 공기를 머금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딪힘에 따라 이런 극단적인 국지성 호우가 내린 것이라 합니다. 부디 고객 여러분은 관련하여 큰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극단은 충동을 일으키고 그 결과는 많은 희생을 가져온다는 이치를 자연 현상에서도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Extreme weather, the Extreme Right... 등이 계속해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조용히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평소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듯 저의 신한관세법인도 늘 그 자리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드리기 위하여 꾸준히 나와 내 주위를 돌아보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증-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

원산지 표시제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김영훈 관세사 (yhy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FTA News-/ 관세 법령 변경

한-EU FTA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최지아 관세사 (jachoic@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기획연재시리즈 ㉔ 보세가공화물 통관절차



임창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US Rulings 연재 ㉔

TEST 장비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신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